# 제425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5월9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개최의 건
- 2.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2.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공청회 개최의 건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 4법에 대해 학계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 4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 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 2.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2항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호찬 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우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께 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방청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위원장이 허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출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성우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지성우** 존경하는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1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나 이유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또 입법론적으로, 법제사적으로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업무의 방대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보도·문화· 법률·산업·지역·기술·성별 등등 6, 7개 분야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필요할 것 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균형성, 품격 있는 방송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사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이사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한다고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영방송 이사회 가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 텔레비전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위 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가 내부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방 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주요 집단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ZDF 이사회를 보면 그 법적 근거가 ZDF-Staatsvertrag에 명시되어 있고요. 47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정부 3명, 정당 대표 12명, 종교단체 5명, 노동·고용단체 3 명 그다음 산업·경제 5명, 언론·출판 3명 그리고 사회복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기타 사회단체 3명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주별 분야 대표가 16명입니다.

따라서 주별 분야 대표 16명과 맨 앞에 47페이지에 연방·주정부 대표 3명과 정당 대표 12명을 합치면 공교롭게도 정부의 영향력은 31명입니다. 정확하게 50%를 약간 넘는 정 부의 영향력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나 정당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벗 어난 그런 제도를 독일은 첫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추천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우리 법하고는 달리 추천기관의 세 가지 모델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주에서 어떤 조직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파견을 주법으로 정하는 경우입 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주에서 로비 조직인 비트콤(Bitkom)이 방송위원회에 대표자 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미리 각 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출된 그 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서너 개의 단체가 한 위원석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추첨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계 단체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 언론계 단체 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독일이 의원내각제 국가이면서 정부 형태가 양당제로 돼 있고 또 지방과 중앙이 분리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추천기관에서 다양한 그러한 영역을 하나씩 맡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독일식이라고 제안된 텔레비전위원회 또는 KBS·MBC· EBS 이사회의 규정은 상당히 일부 부분, 즉 언론 분야만 과대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헌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 분야에 대해 골고루 대표해야 한다라는 헌법 제21조에 배치된다고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사의 신분 보장입니다.

전혀 지금 규정이 없는데요. 이사들도 역시 판사나 검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분 보장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그런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에게도 추가적으로 신분 보장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자격도 법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어떤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되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조항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는 또는 정파적인 인물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독일이나 다른 국가처럼 자유로이 추천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성 과 대표성이 대리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선이 가능하게 될 그러한 규 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 중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에 이사회의 위원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른 기관은 국내 기관이 아니고 FCC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재적위원이나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사무처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3 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의해서만 방통위가 경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방통위를 원래 2008년에 설치했던 그 목적, 그러니까 다양한 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해야만 한다, 개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통위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가 몰각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 즉 국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두 번째, 원래 2008년에 그렇게 어려운 방통위를 설치했던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영묵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최영묵입니다.

진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4법에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검토한 제 의견에 대해서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지금 방송 4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거의 10여 년 반복되고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하고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합리 화하고 정상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반복 순환돼 왔고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것을 이제는 좀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길게 보면 53년 공영방송 KBS 역사에서 KBS 사장 선임 절차 두 번밖에 안 바 뀌었습니다. '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에서 '이사회 추천, 대통령 임면' 그랬다가 '이사회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한 번 바뀌었고요, 2014년에 인사청문회제도 들어온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간 논의가 많았던 것 같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논 의는 늘 소모적으로 반복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송위부터 시작된 합의제 행정기구 내지는 행정청인데 이번 정권에서 거의 독임제 기구로 전략해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들 목도하셨던 것 이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완. 개선할 것인가. 5인 위원회인데 2인으로 운영하는 게 합법인 것처럼 인정되고 있는 상황 을 바로잡지 않으면 방통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법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 공영방송 이사회 문제나 사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 얘기를 늘 했었던 건데 그것을 비판하긴 쉽지만 국회나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 이외에 그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 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심느냐, 뭐 낙하산 이런 거랑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집권당이 갖는 일정한 책임 영역에 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형식 논리에 빠져서 이 논의를 순환·반 복하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이사회를 잘 구성하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 사장 임명인데 사장 임명에 대해서 이사회 임명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사 회를 잘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장 선임하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사회에서 필요하면 추천위원회를 만들거나 검증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런 걸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 로 보장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사회가 부당하게 구성되는 것도 바로잡아야 되고 또 거기서 사장 뽑는 것도 못 미더우니까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해야 되고.

그런데 추천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요 영원히 옥상옥입니다. 누가 위원이 되는 것이고 누가 추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영원히 반 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논의를 지금 20년간, 수십 년간 반복하는 이유는, 여전히 공영방송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최근에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채널이 나오고 상업방송 중심 종편 나오고 OTT 나오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되어 온 건 분명한데 그렇게 SNS나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OTT나 다양한 사적 견해의 시장이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할 것인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이라는, 어떤 상대적인 공정성을 갖는 공영방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도 없는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픈AI가 만든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영 방송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됐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공영방송이 계속 무력화되면 영원히 공론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절박함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말씀을 드렸고 KBS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논의를 하면서, MB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회사니까 방문진 이사회 구성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로 논의가 정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만 들어와도 여야 합의구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야 중심으로 추천이 된다면…… 어떻든 지금 법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집단에서 추천을 하는 것들을 법안에 담아 놨는데요. 그것은 일정하게 폭탄 돌리기입니다. 각단체나 학회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학회가 수십 개 있는데 어느 학회에서, 그러면 학회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합니까? 회장이 자기랑 친한 사람 보내면 되나요? 그러면 학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회 추천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검증이 되나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추천 주체에 의뢰한다라는 걸로 책임이회되지 않습니다. 그 주체들이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입법화할 것인지 이런 순환적인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사가 추천이 된다면 거기에 여야 일정한 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특별다수제는 특정 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사실 사장의 일방 임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저는 논의를 좀 쉽게 풀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 자율성을 다시 논의를 하는 것하고 시청자위원회 강화하는 것하고…… 시청자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되는 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로만 늘 국민이 주인이고 시청자가주인이고 시청자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입법사항이고 이래서 존중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이는데 시청자위원회가 프로그램 모니터링하는 데 이상의 기능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보면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 상당 부분 권한을 좀 주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조항을 두는 문제하고 거기서 편성 책임자를 합의해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그 인사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종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들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 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개념 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영방송 중심의 체제라고 생각하고 KBS EBS MBC가 존재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합의된 개념 이 없습니다. 법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저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시청자들이 생 각하는 공영방송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통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익 추구 수단이라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무슨 하자가 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법적으로 공영방송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해서 공영방송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MBC가 공영방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MBC는 늘 민영화 논란에 휩 쓸릴 수 있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개념 속에 포함되는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방송 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구에서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일 뿐이지요, 법 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MBC는 늘 그런 논란에 휩쓸리는 데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영방송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공영방송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위상과 현 실적 기능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입법화하는 건 또 간단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 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우리 방송법 체제는 2000년 방 송법 체제거든요. 그래서 25년이 됐는데 미디어 시장은 사실 급격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전체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글로벌화한 부분도 있고 오픈AI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을 재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나 논의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그 운영에 대해서 일정하게 사실상 책임 있게, 지금 생존 가능한 구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재원이 없어서 다 망해 버리면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 주셔야만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공영방송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술인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시간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 제한하고 있어요.

- ○최형두 위원 얼마씩입니까?
- **○소위원장 김현** 10분 이내.
-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내가 11시에 의원총회를 가야 되는데……
- ○**소위원장 김현** 10분 이내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 ○최형두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지요, 전체가?
- ○소위원장 김현 다섯 분 있고 50분 하지요.
- ○최형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저로 해 주십시오. 갔다 올게요.

- ○소위원장 김현 아까 소위 위원 아니면 질의할 수 없다고……
- ○최형두 위원 내가 소위 위원이잖아.

(웃음소리)

- ○**소위원장 김현** 죄송합니다. 김우영 위원이 아니지요.
- ○한민수 위원 지금 유일하게 나와 계세요.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순 이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그 후 공론장이 파괴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2016년에 촛불광장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방송개혁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저희 민언련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것, 제작 자율성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방통위를 통합미디어기구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증원과 추천단체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방송 3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사회 정원을 13~15인 정도로 증원하고 추천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각종 현업단체,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사회 정원을 늘리자라고 할 때는 국회 추천 비율이 정원의 3분의 1 정도를 넘지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추천단체를 다변화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내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천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엄정한 정치적 독립이 100%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 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공영방송 사장후보시민추천제를 도입할 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반 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는 것만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100% 보장된다라고 생 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운영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이 의 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냥 하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혹은 명색, 그러니까 겉 의 형식은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지만 실제로 굉장히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운영된 사 례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배를 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추천위원회를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을 하고 추천 완료 일정도 한 사오십 일 전으로 하는 안에 저희는 동의 합니다.

사장후보시민추천위에서 사장후보를 3인 이하로 복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혹은 반복적으로 부결 시에는 결선투표 등을 거쳐서 임명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안에 동 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 주권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핵심 대목인데요. 시청자위원회 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법에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 송사업자, 홈쇼핑 PP로 규정돼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은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하 고 있어서 시청자 권익을 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종합편성 및 보도전 문편성 사업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고 사업자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단순히 들러리,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공영방송 의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자, 국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강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방송편성과 제작의 자율성 강화인데요. 현재 방송법 4조에 종합편성 혹은 보도전문편성 사업자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의무만 있을 뿐 위반한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낙하산 사장이나 본 부장들이 전횡을 행사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편성규약 개정사항 공표와 이 행,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의결사항 준수 등을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이 나 과태료,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성위원회 못지않게 실효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이 저희는 임명 동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이외에도 보도하는 방송으로서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 방송의 경우에 새롭게 종사자 의견 반영을 담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마련할 것을 요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방통위 같은 경우에 위원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도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며 위원 결격사유 에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경우에도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정당원 관련

3년 경과 규정 그리고 대선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형적으로 2인 체제,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위원의 위촉과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위원을 일정기간 내 위촉하고 임명하도록해야 하고요.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그리고 회의를 운영할 때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홍위병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방통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방송 관리감독기구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변화하는 미디어 융합의 이런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통합미디어위원회 같은 이름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이나 IPTV 업무 등을 이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위원회로 재편을 하고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심위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편파적인 심의, 가혹한 징계성 제재로 인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심위의 공정성과 관련된, 보도·논평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 다수제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이것이 어떤 징벌적, 정치적 징벌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현재 방심위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방송·통신등 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혁 위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강혁** 안녕하십니까. 민변 미디어언론위에서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과 같이 연구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4법, 여러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약간 제 개인적 의견도 붙여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방통위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의사정족수 내지는 의결정족수 부분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명시를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안이일단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4인으로 하는 안이 여러 가지 여야 간 정쟁 극심화속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를하되, 이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5인 완전체일 경우 3인이 출석할 경우에 2인 찬성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현행법상보다도 오히려 의결 요건이 후퇴되는, 완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를 유지하는 방안……

결국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방안과 3인으로 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를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보다 근본적·장기적으로는 방통위의 추천 주체를 국회 비교섭단체를 포함해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방통위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

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방통위 위원 임명 그리고 방심위 위원 위촉의 문제인데요. 기존에 방통위·방심 위 위원에 대해서 임명·위촉이 거부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을 하면 일정 기 간—기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30일 정도 적절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기간 안에 대 통령이 임명·위촉을 하도록 하고, 이것 하지 않을 경우에 임명·위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방심위원의 자격 제한(결격) 요건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 재 현행법으로는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에 대 해서만 결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인수위의 전문위원이라든가 대통령직 인수 관 련해서 또 후보자 당선 관련해 가지고 자문·고문을 했다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퇴직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까지도 결격 요건을 추가해서 방통위·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방통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직무대행자도 탄핵소추 할 수 있도록 하 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위원 전체로 탄핵 대상을 넓히 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방심위의 공개회의는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속기록이 누락 됐다라든가 소실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자라는 안을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방심위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에 있 어서 방통위법의 목적 규정에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또 2조(운영원칙) 부분에서 정파적 편향 심의에 나아가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 보장 하고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역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그다음에 현재 방심위 회의 방법에 대한 절차적 규정들이 대부분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을 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심의규정이 자의적으로 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규정이 자 꾸 자의적으로 편파적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공 청회라든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라 는 취지의 규정을 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 방심위 제재조치에 불복한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지 금 법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 3사 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진술인, 전문가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막아 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권 압력 을 공영방송 내부로 전달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장치를 결국 찾아야 되는데, 우선 지배구조 개선 기본 틀에 있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일단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고요. 그래서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한 사장 선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 이것도 의무화해야 한다라 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또 사장 임면 의결 시에 이사회 내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사 수의 증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의결됐다가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 같은 경우에 21인 안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15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사나 사장의 신분 보장이나 직무 독립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사·사장의 해임 내지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작년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 같은 경우 사장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었는데 그것 찬성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사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사 그리고 임원 내지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직무상 독립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사 등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을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내지 사장의 임명 주체 문제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KBS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EBS나 방문진, MBC 같은 경우는 방통위 쪽 내지는, MBC는 물론 주주총회를 통합니다만 오히려 조금 구분돼 있어 가지고 규율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서최근에 일부개정법안들 같은 경우 가능한 KBS처럼 방문진 이사라든가 EBS 이사·사장이라든가 대통령을 임명 주체로 하는 부분으로 하자라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이 부분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격에 대한, 위상에 대한 인정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만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할 경우에 보다 상급의 행정조직인 대통령이 방통위보다 인사에 있어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논리 구성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법 통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KBS를, KBS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명 주체를 KBS 같은 경우도 방통위로 통일시키는 안이 어떨지, 이것도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정의 규정에서 MBC의 다소 불분명한 법적 지위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 MBC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시청자 주권 실현이라는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청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현재 시청자위원의 위촉 권한이 방송사 의 경영진에게 맡겨져 있어 가지고 이사 선임이라든가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시청자 위원회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가 관철되면서 또 이사 자체에도 경영진의 이해가 투영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제로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에 편성위원회에 관여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 참여 방식을 채택한다든 가 하는 식으로 구성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상근직을 시청자위원회 내에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안 등으로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적 보완도 같이 결합돼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찬 위원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호찬**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입법공청회에서 이렇게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 개 정의 필요성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여를 반추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KBS MBC EBS YTN TBS 등 공영방송 장악에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뇌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이 12·3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 다. 장악된 KBS 수뇌부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됐고, 포고령에는 심지어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장악하지 못한 MBC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 이 확인됐고요. 내란 이후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EBS 사장을 알박기하려 시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이 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집권 기간에,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다른 것인 지 온 국민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공영방송의 존재가 얼마나 소 중한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지 난겨울 넉 달 동안 광장을 지킨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국회에서 이 법의 논의에 속도를 내서 법 개정에 적극적 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 3법 어디에도 여 7·야 4. 여 6·야 3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공영방 송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관 행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듯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과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사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견제시 스템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내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현재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요 각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사 수에서 국회 이사 추천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사유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국회 추천 몫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법조계,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시민사회 추천 몫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종사자 대표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EBS의 경우에는 교육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이사 추천 주체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 회 과정에 종사자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후보자들을 평가를 할 때 사실 각 공영방송 사장후보자들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과거 삶의 이력들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저는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투표를 퍼센티지로 반영하든 사장추천 위원회 과정의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든 사장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종사자들의 평가가 포함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기존 법들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모든 후보자를 면접하고 거기서 복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효율적인 면접,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면접은 이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이사회에서 몇 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사람들을 사장추천위 과정에서 고르는 이런 과정이 어떻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사장 임명 주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EBS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사도 방통위에서 뽑고 사장도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구조인데 EBS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는 KBS와 동일하게 이사회가 사장후보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있고 주식회사의 형태여서 MBC의 이사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MBC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임명 주체 관련해서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신중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의 견제 시스템입니다. 여러 법안들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 데요.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2012년의 MBC 파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 조직들에는 편성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한 공 정방송 조항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이미 노사가 합의한 규약들에 담겨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들어와서 모조리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 만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저는 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전횡으로 공 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않도록 편성규약이나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임명동의 제의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편성위원회의 설치 역시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의무화하는 원칙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 견제 시스템의 장치들을 위반했 을 시에는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나 앞서 얘기하셨듯이 방송 재허가나 재승인의 평가 요소 로 반영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노사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일방적인 사장 한 사람이 무 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듯이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주체로 포함을 시키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 시청자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안에 있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재구성한 다 음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를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주체로 담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공영방송의 문제만을 말씀드렸는데 보도전문채널의 문제 들도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YTN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김백 사장이 들어온 이후 기존에 노사가 합의한 모든 공정방송 조항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강제 할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는 보도 책임자에 한해서 임 명동의제라든지 기존에 기합의돼 있었던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최소한의 내부 견제장치가 이번 방송법 개정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법안들이 과방위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입장에 서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법안들을 하나의 법안으 로 병합시키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과방위에서 지금의 의지대로 계속해서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병합해 주셔서, 저는 이번 대선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던 윤석 열 정권을 파면시키고 광장에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대선이라고 하면 대선 이후에 새로 등장한 정부에서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 는,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방송 3법이 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 도록 여기 계신 과방위 위원님들과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 차원의 공청회는 자유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만 음성인식으로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두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최형두 간사님부터 하세요.
- ○최형두 위원 시간 얼마나 주십니까?
- ○소위원장 김현 하세요.
- ○**최형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점심 전에 한 번씩 발언하셔야 되니까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 ○한민수 위원 10분이요?
- ○최형두 위원 어제 우리 15분 했잖아요.
- ○소위원장 김현 마이크가 안 꺼지니까요.
- ○최형두 위원 우선 오늘 비도 오는데 진술하시러 오신 전문가 또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신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님 존경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10초 덜 쓴 이호찬 위원장님도요.
- ○최형두 위원 이호찬 위원장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숫자가 4명인데 지금 우리가 비상 상황이어서 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은 잘 알고 있고 오늘 또 속기록을 통해서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진술인 숫자도 4 대 2로 하자고 했는데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성우 교수님이 특히 법안 중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독일식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으로서 상세한 논의를 해 주셔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공영 방송 이사 선임 구조 또 사장의 구조가 글로벌 표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여야를 서로 바꿔 가면서 민주당과 또 우리 당 계열의 정당들이 서로…… 그리고 이해민 의원 정당이 새롭게 나타나서 새로운 혁신이 기대됩니다만 정권 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많이 논의한 결과가, 그동안의 역사적 지혜가 모인 곳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방송노조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걱정하는 것도 이른바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 보도 편향, 보도 시간의 배정 이런 것들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이걸 잡아서일방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계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국회가 지켜 왔던 방송법 구조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기도 하고 BBC라든가 또는 NHK라든가 미국 PBS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보도준칙의 문제, 왜 BBC라든가 NHK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은 그런 편향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가, 정치적 외압에 덜 시달리는가 하 는 문제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몇몇 진술인들께서 국민의 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광장의 염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때 대표되는 국민은 누구인지,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에 대 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심하게 얘기하자면 국민의 대의기구 국회가 여론조사해 보면 가장 불신받는 국가 기관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는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하셨는데 광장도 지난번에 분열됐습니다. 이것 도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광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국 민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삼사십 프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여론은 묵살되 거나 짓밟혀도 좋은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진술인들이 또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장의 승리로 방송법이 쟁취의 대상이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 민들에게도 매우 큰 결례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의,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그동안 거쳐 갔던 사장들도 잘 압니다. 90년대에 여기 한민수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기 자 생활할 때는 기자실에서 다 잘 지냈는데……

- ○**노종면 위원** 저도 90년대에 기자였습니다.
- ○**최형두 위원** 한민수 위원님은 특별히 기자실을 같이 많이 다녀서, 노 위원님하고 이 훈기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은 레벨이 달라서……
- ○**소위원장 김현** 방송이라서 그렇지요, 방송.
- ○**최형두 위원** 방송이어서 그렇습니다. 신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송기자랑 같이 있어 보면 그때는 참 사이좋게 지냈는데 왜 그렇게, 내 가 깜짝 놀란 것은 10년 뒤에 만나 보니까 방송사 내에서 완전히 서로 적이 되어 가지고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방송사의 이사진 구조에서 방송사 종사자…… 종사자는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노조가 방송사 이사회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것이 이 게 현재 내전을 방불케 하는, 또 정권이 바뀌면 서로 심각한 인권침해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이사회 구조에서 노조의 입김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인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MBC의 경우는 사실은 1노조와 3노조가 있지요. 3노조입니까, 2노조입니까, 위원 장님?

- ○**진술인 이호찬** 3노조입니다.
- ○**최형두 위원** 왜 2노조는 없지요?
- ○**진술인 이호찬** 2노조는 다 정년퇴직하시고 해서 조합원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 ○소위원장 김현 참고로 MBC지부장이 아니에요.
-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 ○소위원장 김현 MBC지부장은 지금 뒤에 계세요.
- ○최형두 위원 예.

지금 더구나 큰 노조와 작은 노조 간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주로 되고 시청자 주권, 국민 주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청자 주권이……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원, 그러면 시청자위원회도 역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이게 말하자면 국민이……

아까 첫 번째에 최형묵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후견주의는 물론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출된 권력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위원회 또 방송 종사자, 방송 종사자가 방송이야 전문가겠지만…… 그러나 공영방송은 지상파라는 국민의 재산 또 방송을 보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매체인데 거기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누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그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시청자 주권주의이런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이 방송사 지배구조 논의보다는 왜 우리 방송사는 보도 시간이라든 가 보도 준수라든가 또는 보도의 편향이라든가 심지어 허위·조작 뉴스의 문제까지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좀 더 천착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BBC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의 표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매우 엄격한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열여섯 가지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컨대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정확성(accuracy), 균형, 맥락, 거리두기, 공평성 이런 거지요. 밸런스(balance), 콘텍스트(context), 공평성(evenhandedness) 그다음에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무편견성(open-mindedness), 엄격성(rigor), 진실(truth), 자각(self awareness), 투명성.

그러니까 12개 하위 요소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 해서 MBC든 KBS든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준칙대로 과연 됐느냐?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이 우리 과방위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고 미국에서는 페어니스 독트린이 폐기되었다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한데 사실은 역사적 맥락을 보면 참 이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페어니스 독트린을 도입한 정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입했는데 이걸 레이건 때 공화당 정부가 폐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인데……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하게 된 이유는 1940년대·50년대를 즈음해서 미국 방송계가 세

군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고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탄생되면서 미국 FCC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이때 FCC는 민주당 때 FCC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원칙을 이겼 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공화당 때 거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어 니스 독트린은 또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equal opportunity equal time)이라는 것은 미국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방통위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 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면 그 국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 간 내에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2인 체제가 국회가 추천했는데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 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새롭게 국회 또한 3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그걸 또 임명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훈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인 체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 책임 또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회가 의결한 부분을 정부가 일정 시간 내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는 동의하고 그런 개 인적인 의견을 당시에 법제처장한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빨리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그걸 7개월씩 끈다고 하는 것은 큰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낳았다 고 하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새롭게 국회가 추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 1년여 동안 헌법재판이 열리는, 바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재판이 열리는 그때까지 도 1년 몇 개월 동안 방통위 국회 추천 3명을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국회는 방통위는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했던 김형두 재판관과 여러 재판관의 말 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출인께서 오셔서 왜 국민의힘 위원들은 적으냐라는 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입장을 쭉 말씀드렸고 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 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절대다수는 아니라 할지라 도 상당수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에게는 그냥 침묵하 고 닥치고 들어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진술인분들 전문성 또 고민이 담긴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 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 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 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추천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 따라서 달라요. 국회에서 다 추천하는 안을 낸 의원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존중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는 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회만큼 중심을 잡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솔직히.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추천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사실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항상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입장이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걱정을 하시면서 약간 우려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영묵 교수님?

- ○진술인 최영목 예.
- ○**이훈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 ○**진술인 최영묵** 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 ○이훈기 위원 예.
- ○**진술인 최영묵** 위원님, 제 답변은 아니고 보충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훈기 위원 예.
- ○진술인 최영목 저는 그 후견주의라는 말의 의미도 각자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거든 요. 후견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움직이면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입을 한다면 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정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천의 주체를, 국회도 사실은 지금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나 언론의 자유랑 충돌할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직접 공영방송 이사회를 추천하는 걸 입법화해 놓지는 않았잖아요, 양당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 부분 후견주의로 작용해 온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회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구성원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공사 구성원들이 2인을 추천한다그러면 그걸 공사 누가 추천할 것이냐. 지금 현재 사장이 하느냐 노조가 하느냐, 아니면 사원 대표가 하느냐 직능 대표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란들이 모든 다른 단체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추천

하던 절차가. 그러면 학회로 가면 관련 학회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 학회 에 보내면 다른 학회에서 '왜 우리한테는 권리를 안 주냐, 법적으로 무슨 근거냐', 회원수 를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역사를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양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추천권을 행사하게 함으로 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공영방송 운 영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정당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회는 말씀하셨듯이 선출된 다양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서 어떤 행정이나 언론기구의 합의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을 임의단체에 가까운 단체들에게 위임했을 때 그 단체들은 어떤 절 차를 거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안 된다 면.....

저도 어떤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방심위의 대선 방송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로 저를 추천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완 장치가 충분히 없으면 이훈기 위 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 니다.

# ○**이훈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순 이사님하고 이호찬 위원장님이나 이강혁 변호사님은 좀 완화해 야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짧게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이진순** 그래도 국회가 어쨌든 선출된 권력인데 이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 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을 추천한 기관이 어떤 정 당이냐 혹은 어떤 학회라든가 혹은 다른 혀업 단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사로서 활동 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과 자세가 매우 달라집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 추천에 대해서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그동안은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았었지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라고 무 슨 간판 달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 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여야 간에 협치가 잘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사회 도 잘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쪽 정당 추천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정치가 경직이 되고 양당이 무한 대치를 하면 이사회도 마치 그 복제인간처럼 똑같이 경직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의견은 정해져 있습니다. 긴 토론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경직되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언론이라도 제 기능을 하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공론화해서 새롭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집단지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과 똑같은 유사 정당의 비율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진술인 이강혁**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그런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방식의 선출, 추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자면 헌법의 원리 중에 권력분립 원리라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국회가 민주적 대표성이 강하고 정당성이 확실히 있다고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입니다. 국민들의 뜻 자체가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급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예를 들어 국회가 가장 잘 대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어디보다도 잘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우리가 또 지적을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로 추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 옮기는 문제는, 확대하는 문제는 새로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존에, 물론 가장 현실성은 유지해야겠습니다만 국회가 지닌 그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또한 새롭게 다양하게 추천되는 이사들이, 그러한 루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본적·이상적으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인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순진한 표현, 그런 논리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써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훈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술인 이호찬** 저도 한 말씀……
- ○**소위원장 김현** 예. 이호찬 위원장님.

○진술인 이호찬 우리가 지금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기존에 존재했던 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법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를 정당이 6 대 3, 7 대 4로 나눠서 추천하는 구조가 지내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보여서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표면화시켜서 공식적으로 여 6, 야 3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 차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공 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이 대다수를 갖는 구조는 변화의 실험을 해 보는 게 필요하 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에도 각 주체는 다양화하지만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사를 추천할 것인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자라고 보완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학회 이사장 혼자 개인의 판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학회도 학회 나름대로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종사자도 종사자대로 추천 기준을 만들고 시청자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

아까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종사자든 시청자위든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서 종사자의 의견도 반영되 고 시청자의 의견도 반영되고 법조계의 의견, 학회의 의견, 정치권의 의견을 다양화하면 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자라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요. 그런 차원에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훈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건 확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인데, 제가 작년에 처음 발의한 법안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잉 입법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전문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냈고. 그래 갖고 그 법안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호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왜 이 걸 강조하느냐 하면 KBS가 낙하산 사장이 오고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 ○**소위원장 김현** 조금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이훈기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편성규약, 편성위원회가 거의 유일한 장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꼭 이걸 개정하는 법에 넣어야 된 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호찬 위원장님이 현업에서 많이 느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진술인 이호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에서 사장 한 명이 교체가 되면 그 사 장 한 명의 입맛에 맞는 보직 간부들로 인사권이라는 이름하에 모두가 교체됩니다. 그래 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의 마지막 출고 권한을 그 사장이 임명한 보직 간부들이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장 한 사람의 뜻이 전체 공영방송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사장의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색깔이 하루아침에 달라지 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내부의 편성위원회를 통한 내부 토론이고 내 부의 주요 보직 간부나 보도나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같은 절차들이거든요. 그 런 절차들을 통해서 사장의 생각이나 보직 간부들의 생각, 구성원들의 생각이 서로 토론 되고 견제되면서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대법원이 이야기한 공정방송의 핵심 요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내부의 임명동의제 포함 편성위원회 이 런 견제 시스템이 반드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지금 15분째예요. 기다리는……
-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할게요.

이강혁 변호사님, 이게 과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강혁** 이 부분이 이전부터 편성위 관련해서 입법화·제도화를 주장하려고 하 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위 편성권 내지 편집권이 사측의, 사주의 전적인 권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나누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이 위헌·위법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그런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 및 편집권 내지는 헌법적 차원에서는 언론의 내적자 유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사주 측에만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약간 낡은 이론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보다 새로운 이론, 사실 아직 명확하게 다른 선진국 사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전통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소위 현업인들, 실무자들에게도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그런 권리·권한들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위 옛날에 1세기 전부터, 이전에 독일이라든가 유럽에서 그런 글이 있었고 그렇게 입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할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수십여 년에 걸친 언론의 내적자유를 위한 현업인들의 투쟁이나 요구나 필요성, 그런 공감대가 이미 제기돼 왔고 이어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다음으로……
- ○**이훈기 위원** 세 번째, 짧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지요.
- ○이훈기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이정헌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이정헌 위원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 한 명을 바꾸면 그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송장악이라든지 언론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묵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천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이사회가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쉽게 해 왔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일응 타당하기도 하고 또 이진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줄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영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추천권을 좀 다양화하면 면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학회라든지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면 그 추천 주체는 도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추천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우 교수님께서 독일 방송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독일의 경우에 지금 60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대표

성을 갖기 위해서 한 6개 분야로 나눠 주셨는데, 지성우 교수님이 안 계시는군요. 그렇다 면 과연 진술해 주신 교수님들이나 이사님들의 경우에는 몇 명 정도면 정확하게 괜찮겠 는지 짧게짧게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진순 이사님은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공영방송의……

- ○**진술인 이진순**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안에 따라서 특별다수제로 의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인 내외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이정헌 위원** 15명.

최 교수님은요?

- ○**진술인 최영묵** 독일이 예외적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요, 독일이 연방제 비슷 한 국가에다가 종교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인종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각 집단의 대표성 을 보장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15 인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정헌 위원** 예, 최대 15명?
- ○**진술인 최영묵** KBS가 지금 11인인데 굉장히 자의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는 9인이거나 15인이거나 이런 정도에서 이사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정헌 위원** 이강혁 변호사님은 몇 명 정도가 적당할까요?
- ○**진술인 이강혁**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안들 중에서 15인 한시적……
- **○이정헌 위원** 15인. 이호찬 위원장님.
- ○**진술인 이호찬** 자실 이사 추천 주체를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다 맞물려 있는 문제여 서요. 저희가 대략 생각할 때 13인 정도 내외에서 13~15인, 적게는 11인, 그런데 기존의 이사 숫자보다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13~15인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정헌 위원** 끝으로 최영묵 교수님. 아까 사장추천위원회도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신가요?
- ○**진술인 최영묵** 저는 KBS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사장을 선출해 봤던 경험이 있고 그때 여야 이사들이 합의로 대통령이 내정한 사장을 안 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KBS에서 사장후보 2인에 대해서 100인의 시민을 모아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그전 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문제를 갖고 시민들 찬반을 물었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된 케이스인데 KBS나 공사 사장을 뽑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지극히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그걸 들여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편성규약이라든지 임명동의제 이행 의무화,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부 견제 시스템의 법제화에 저는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 ○**노종면 위원** 이진순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후보 시민추천위원회 제안해 주셨는데 이게 법제화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사회 의무 규정 정도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구성과 운영 방식,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제안 주신 내용들이 다 법제화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그 부분부터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진술인 이진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사추위 위원을 무작위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고려해서 무작위로 뽑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할 것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인기투표나 이미지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론화위원 회 수준에 준하는 숙의적 토론과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행령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더라도 그런 숙의와 충분한 사전 검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노종면 위원 우리가 지금 이사회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그 이사회에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면 이사회가,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이사회를 만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 또는 원칙 이런 것들을 법에 담는 것은 최소화해도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술인 이진순** 기본적인 원칙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강조할 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이진순 아까 상당히 비용적 낭비일 수 있고 굳이 사추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선량한 의지에 기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다가는 항상 다른 부작용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사추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먼저 이석하셨지만 최형두 위원님이 광장도 분열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국민은 배제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 과정에서 토론돼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한 명 잘못……

○노종면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쟁점을 다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논점을 좀 분명히 하는 데까지만이라도 가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한다면 규율 대상이 되는 방송의 범위가 공영방송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도를 담당하는 그런 채널들을 종편, 보도전문채널까지 아우르잖아요. 거 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진술인 이진순** 저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영방송 KBS MBC

EBS 등등과 더불어서 YTN이라든가 보도전문채널에서는 특히 사장이 어떤 식으로 대내 외적인 신뢰를 받고 뽑힌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민주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 다.

○**노종면 위원** 공공적이어야 하는 보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이진순**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도입 방식이 편성위에서 판단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직접 법에서 이런 채 널들은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술인 이진순** 저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방송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단체협약에 위임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회사마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도와 편성, 시 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임명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예 명문화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묵 교수님, 지금 이런 뭔가 제도가 필요한 대상을 얘기할 때 공영방송이냐 또는 보도를 담당하는 그런 방송으로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준인데 교수님 이 주신 의견을 보면 공영방송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 오던 차에 제가 법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는 생 각이 있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순 이사님처럼 공영방송보다 조금 더 확장된 대상을 규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실 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3의 개념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방송, 이것의 기준이 저는 우리가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예를 들면 해당 방송사의 지분구조가 다 있는 데 거기 지분의 주식이 공개가 돼서 일반 국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산이 일정한 수치를 넘어서면, 퍼센티지를 넘어서면 공적인 성격의 방송으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속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도 책임자 임 명동의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적인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 이 혹시 학계에서 있습니까?

○**진술인 최영묵** 예, 공영방송 개념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공적 서비스들에 대해서 PSB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특히 긴요할 수 밖에 없는 게 정부가 투자한 KBS나 KBS 3채널 성격을 가졌던 EBS 그리고 공영방송 범주를 영역적으로 규정할 경우 MBC는 한 번도 공영방송이었던 적이 없어요. 운영을 좀 공적으로 하게 한 거지요. 원래 상업방송이었고 그리고 한 번도 국가가 직접, 80년대 에 KBS가 지분을 가졌던 게 유일했던 것이고 그것을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들어서 몰아 줬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 공영방송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PSB라는 개념으로 공정

성을 갖는 보도전문채널까지 넣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종면 위원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 이른바 사영화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인삼공사가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50% 가까이 일반 국민들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삼공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T&G는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적 기관이 또 대주주로서 참여하고 있기때문에 이 정도면 공적 방송으로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최영묵** 그것은 굉장히 깊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소유 문제로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방문진이 70%,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구가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방송사거든요. 그걸 우리는 공적인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YTN도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사 숫자에 대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추천 주체의 적절성 그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절대 인원에 대한 판단 이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해 볼 때 적절성에 대한 기준들은 다 어느 정도 공유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대표성을 갖냐 안 갖냐, 각 주체로 거론되는 것들이 합리적인가, 합당한가 이런 판단들은 다르겠지만 다 나름대로는 기준 가지고 판단하실 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사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다양성을 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일방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겠다, 다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겠다. 맞지요?

여기에 더해서 소수가 똘똘 뭉쳐서 무조건 방해하기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대부분의 법안들에 특별다수제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전제하면 소수라도 똘똘 뭉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막아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보면 어떤 구성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가, 어떤 구성이 균열이 그나마 더 날 수 있는가, 달리 말씀드리면 설득이 가능한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이사회일수록 설득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한 가지, 그래도 세력으로 무리 지어질 수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서 균열을 낼 수 있으려면 그 숫자가 적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명중에 1명을 설득해 내는 것하고 3명 중에 1명을 설득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느는 것이 설득을 현실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혁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술인 이강혁**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진술드릴 때 그 관련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15인 안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 단계로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다익선 입

장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 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 수라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다양한 추천 주체에 의해서 이사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파적 편향, 전횡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는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 다.

-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최영묵 교수님께서 아까 폭탄 돌리기다라는 표현까지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추천단체 다양화하는 방안을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 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후견성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도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냐면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킬 방도가 뾰족하 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선임 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면 오히려 국민들 투표로 선출된 국회가 임명을 하고 대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점까지 사실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특별다수제가 중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은 뱅뱅 도는 이 논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영묵 교수님께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 성 논란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부 구성원인 공사 임직원이다라는 의견들 또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과 사추위 구성에 공사 임직원이 반영되어야 한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질문들을 남겨 놓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호찬 위원장님께서는 사추위 관련해서 3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단계 서류면접을 이사회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방통위에서 2시간 만에 83명 심사하는 수준 아니고 제 대로 심사하려면 1단계 서면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단계 서류면접 거치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 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진순 이사님께서는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준수하고 관련해 서 위반할 때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과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 영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법안이 각각 발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의견을 세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 최영묵**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논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 강한 면이 있잖아요, 정치적 개입 문제를. 그런데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규율하는 사장의 문제잖 아요, 일상적인 일터의 문제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일 마주치는 방송을 누가 어떻 게 만드는 거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입장이 당연히 시청자하고 구성원 쪽으로 옮겨져야만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구성원들이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보장 안 돼 있었는데 호주 ABC나 BBC는 그런 절차가 일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단체보다도.

그다음에 명분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법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자꾸 위원회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장이나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핸들링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어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권리는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한테.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르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자격요건을 미리 다 정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호찬 위원장님, 짧게 좀 요약해서······

○진술인 이호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좀 차단을 하자는 차원이고요. 당장 MBC 사장이든 KBS 사장이든, EBS 이사회 보궐이사도 몇십 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자 모든 사람을 일반 국민들 100명, 200명 단위의 사장추천위가 모여서 거기서 3배수를 추리는 것은 그 심사 절차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어떤 정도의 명수는 사전면접을 통해서 줄여서 사추위로 보내고 사추위가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진순 이사님.

○진술인 이진순 지금 실제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무화하고 여기서 위반할 시에 벌칙, 과태료, 재승인·재허가 심사 시에 불이익을 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는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편성규약은 그럴듯하게 해 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방송 내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경영진이 함부로 위반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방송 종사자들 내에서 따로 집회를 한다든가 파업을 주도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국민 모두에게 간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방송 노조의 몫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적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다섯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위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안 14건, 방송문화진흥회법 13건, EBS법 13건, 방통위법 4건 등 총 44건의 법률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4건의 법률안에 담긴 조문들, 조항들 다양하지만 입법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 니다. 다들 우리가…… 국민의힘 위원들 안 계십니다마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정 권을 취재도 해 보고 겪어 봤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참 무도한 언론·방송 장악을 끊임없 이 시도하고 또 일부 시도를 달성하고 그런 정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다수의 법안은…… 첫째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을 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치적 후견 주의를, 공영방송에 대한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 세 번째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치 권력 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특별다수제 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도록 이사회의 정 원을 확대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술인들께서 국회 추천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간에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우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랄지 특별다수제가 도 입되고 지금의 이런 사회 공론화된 분위기에서 법안이 마련됐을 경우에 이전과 같은 정 파성을 가진 이사들만 추천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 최영묵 교수님, 간단하게……

진술할 때 말씀하신 것 보면 각 단체의 추천 방식은 어떤 단체에 추천권을 줄 것인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는 추천 방식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술인 최영묵** 저는 추천을 확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구 성원, 종사자들의 추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자기 사장 선임 의 문제고 이사 선임의 문제니까 그쪽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늘어 갈 때는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을 넣을 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근거가 있 는 단체가 있겠는가, 물론 학회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사회는 고유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각 각 다 추천해 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별 전문성이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 나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 면 법률가도 필요하면 변호사단체의 추천도 하나 넣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 ○**한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진술인 최영묵** 그러면 무한대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추천 영역이.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단체가 몇 개겠습니까?
-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진술인 최영묵** 저는 그것을 어떻게 몇 개로 줄일 수 있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 니다.
- ○**한민수 위원** 그리고 이진순 이사님하고 이호찬 위원장님 보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성 강화 목소리 같이 내셨는데 국회 추천 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한다는 말씀 죽 하셨거든요. 절반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를, 아까 잠깐 이호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국회 몫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의미랄까요?

○**진술인 이진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관 혹은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별다수제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에 이 국회 추천으로 이사가 되신 분들 사이에서 계속 공전된다거나 아무리 토론해도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느쪽에 표를 던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하게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투표 성향을 그냥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다수제……

○**한민수 위원** 그러면 다른 추천하는 단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술인 이진순 추천하는 단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학회라든가 무슨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최영묵 교수님 말씀하신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몫을 3분의 1 이하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국회 추천 이사들이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사전에 정하고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비율이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추천 단체들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 방식은 공사 임직원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현업단체도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찬 위원장님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진술인 이호찬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자고 우리가 법을 고치는데 그래서 정권의,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 의석 수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수가 계 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공영방송이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성 논란 있는 것 알고 문제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본회의를 두 번씩이나 통과시켰던 그 방송법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하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100%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실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영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다양화할 수 있는, 독립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강혁 변호사님, 임명권자 통일성 강조하시면서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 통일하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진술인 이강혁** 아니, 그렇게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오히려 방통위 측으로 통일해 몰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뒤에 지금 참석하신 방통위 측 사무처장님, 앞에서 얘기하든 저기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국회 차 원에서 2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진술도 듣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절차가 만약에 국회에서 진행되면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의견을 또 내실 겁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저희가 사무처에서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처가 의견을 준비해서 상임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들이 아무런 논거 없이, 근거 없이 회의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떤 1안·2안 제출해서 논의해서 회의에서 정하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소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 ○소위원장 김현 그때도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얘 기하는 취지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공청회를 밟고 토론회를 진행해서 진술인 얘기를 듣고 하는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의미예요.

잘 검토하세요.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적인 위 원회 안건의 경우는 사무처에서 말씀……
-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야당의 의 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언제까지 낼 거냐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잖아요.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의견을 낼지 말지를 저희 사 무처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오늘……
-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의견을 낼 준비를 하셔야지요.
-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말씀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송기반국장·정책국장 나와 보세요.

- 이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를 하셔야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겸방송기반국장 박동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다음 주까지 검토해서 제출하십시오. 의견이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나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 있잖아요. 지난번에 21대 때도 논의됐던 내용이 있고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어떻게 할 건지, 통합미디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편성에 대한 문제, 시청자위원회 문제, 이사 구성에 대한 문제, 편성권에 대한 문제 등 다 포함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하십시오, 국회에.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겸방송기반국장 박동주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YTN 전준형 지부장님!

지난 4월 30일 날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YTN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아니지만 그나마 어쨌든 YTN의 현주소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YTN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송 4법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장 전준형 일단 보도전문채널 같은 경우는 뉴스가 거의 콘 텐츠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의 독립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동안 공적 소유구조였던 YTN에서는 소유와 경영 그리고 보도,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소 유와 경영을 분리한 핵심 제도가 사장추천위원회였고 경영과 보도를 분리하는 가장 핵심 적인 제도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기업으로 바뀐 이후에 가장 먼저 열린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폐기가 됐고요. 곧바로 이사회에서 김백 사장을 선임하면서 최대주주가 경영에 직접개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선임된 김백 사장이 가장 먼저 한 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 장을 바꾸는 등 전체 사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로써 경영이 보도에 대해 개 입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국 공적 소유구조가 민영화되면서, 사영화되면서 그동안 보도의 독립성을 지켜 왔던 핵심 제도 두 가지가 모두 무력화된 겁니다.

따라서 보도전문채널의 어떤 공정성과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장 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지켜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처럼 이 미 단협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안에 명시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KBS 박상현 본부장님!

지금 진술인들의 발제 내용 중에 KBS의 경영구조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수신료위원회를 국회 안에 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형태가 고민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2021년도에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KBS의 입장이 있었고 방통위의 검토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KBS 안에서의 혹시 내용이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장 박상현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 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책들은 제도적인 지 원책뿐만이 아니라 재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단 수신료 통합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하 나의 큰 계기는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신료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분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준의 수신료가 적정한지 이러 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준비해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EBS 김성관 지부장님!

내용에 EBS를 추천하는 것을 이강혁 변호사의 경우는 지금대로 방통위가 하는 게 맞 고 또 어떤 진술인의 경우는, EBS 측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장 김성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방통 위가 EBS의 이사 임명 그리고 사장 임명까지 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방 통위에서 결정한 것만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사 추천 을 통해서 사장이 선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임명에 대한 것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구조로, KBS와 동일한 수신료 재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MBC 본부장님!

사실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잖아요?

-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장 전성관 예.
- ○**소위원장 김현** KBS도 그렇고 EBS도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통합미디어법이 됐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됐든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MBC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MBC 종사자들의 입장 내지는 말씀하실 내 용 있다면요?
- ○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장 전성관 제가 종사자 입장으로서는, 종사자 대표로서는 당연히 MBC는 그동안 정체성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에 앞서 교수님이나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지분 구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종면 위원님 말씀처럼 공적인 성 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단 이제 MBC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MBC의 보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 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셔서 공영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그래도 짧게 제가 다 청취를 했고요.
  - 그리고 진술인들 혹시―지금 시간이 12시를 경과했는데요―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로 해서 간단하게 듣고 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진술인 최영묵 교수님.

○**진술인 최영묵**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마무리 말씀 드리자면 이 논의가 사실 미디어법 전체를 다시 논의하는 시발점이 지 종결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견주의라는 말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들여다보면 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부조적인 상황들인 건데 마치 그걸 해 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해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모호한 겁니다. 국회 이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어요. 어디다가 그걸 맡길 겁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 에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이걸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관점은 정치나 사업자 관점이 아니라 시청자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 주셔야 공영방송이 이후에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종사자들 입장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그게 필요하고 존속할 가치가 있다는 걸 국민이 인정해야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감사합니다.

이진순 이사님.

○진술인 이진순 저희가 강조하는 시민 권한 확대, 시청자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저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모든 미디어의 이용자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가는 게 기본 추세입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때그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국민적 공론장을 주도하는 신뢰를 받기가 어렵고 그것 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일단 분리된 시청자위원회 혹은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검토 중인 여러 발의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 저희는 기존의 방통위가 계속 존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변화 상황 을 볼 때도 그러하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동안 이미 해 왔던 여러 역할들이 국 민들의 신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새로운 미디어위원회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님.

○진술인 이강혁 아까 중간에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 주권 실현이라는 이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일반화시켜 보자면, 정치 일반화로 나아가면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것과 매우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만 단순히 변화된 디지털 환경 이런 것 속에서 이상을 펼쳐 볼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일정한 한계가지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것처럼 시청자 주권 실현에 부합한다고 하는 제반의 제도라는 것

들이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방송 독립성 침해 이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청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입법 마무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감사합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

- ○**진술인 이호찬**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말씀드 렸듯이 100% 완벽한 답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 과정 속에서 해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저도 말씀드렸듯이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했 다가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시켰던 그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서 21명 이사일 때 아마도 국회 추천 몫이 6명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인가를 과방위 내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기존 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사장추천위 과정에서 의 종사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 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 인가도 함께 꼭 소중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혹시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력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 논의가 근 2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반드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 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내란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 정치 독립에 관한 법률이 논의가 되고 제정을 앞두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이룰 법안이 마련이 되는 의미를 잘 살려서 법안을 마련해 주시 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두어 시간 동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1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이 함께 방송 4법에 대한 개정 안을 제출했으나 거부권에 밀려서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목전에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 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 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를 저희가 부여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에 야당 의원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진술인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 현 노종면 이정헌 이해민 이훈기 최형두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석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겸방송기반국장 박동주

## ○출석 진술인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이강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이호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지성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